



1. 이번 호의 이슈

전문가 칼럼

청소년 담배구매 가능 연령의 법적 규제 현황과 과제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청소년은 몸도 마음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니코틴 중독증에 걸리기 쉽다. 그러면 신체적 건강이 손상되고 나아가 자신의 뜻대로 건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른 나이에 담배사용을 시작할수록 더욱 심각하게 니코틴 의존증에 빠져서 자존감을 상실하기 쉽다

이와 같이 어린 나이에 담배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서 청소년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에서는 청소년 대상 담배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상 규제의 내용과 실제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소년보호법상 담배거래 규제

먼저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제외된다(제2조 제1호).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의사의 출생증명서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구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노1765 판결)

주류 및 담배는 마약류, 환각물질 등과 더불어 청소년유해약물에 속한다(제2조 제4호 가목). 성인의 경우 마약류나 환각물질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주류 및 담배 거래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와 담배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벌

금 등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판매업자 즉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판매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한 경우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아가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담배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배소매업자는 담배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 등 포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제28조).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등(자동기계장치 등을 통한 거래 포함)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9조 제6호). 편의점의 알바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규정에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청소년의 부탁으로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제59조 제7호). 청소년에 대한 담배의 판매 등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같다(제59조 제7의 2호).

2. 담배사업법상 담배거래 규제

담배는 생명과 건강을 해치므로 그 판매를 자유롭게 방치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판매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나 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되면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제16조). 보통 편의점 사업주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담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2개월, 2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제17조 제2항 제7호, 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혹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이 경미한 경우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담배거래 규제 사례를 판결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

3. 청소년보호를 위한 담배거래 규제에 대한 판결 사례

먼저 청소년의 담배거래가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판매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비록 담배 구매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청소년이 법정대리인 어머니의 동의하에 술을 구매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악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비록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담배 같은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청소년 부모가 동의했다고 해서 담배 판매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다.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그 부모의 뜻에만 맡겨둘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람은 대체로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편의점 영업주인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청소년의 성장속도가 빨라서 외모만 보아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분간이 쉽지 않다. 이런 사정을 전제로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인이라고 주장한 청소년에 속아 넘어가 담배를 판매했지만 1개월

이라도 영업정지가 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원고 담배소매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개 신분증을 주의해서 보면 구매자가 신분증의 당사자인지 식별이 가능한 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문제가 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위 처분 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것인 점, 영업정지 처분이 실행되어도 담배 판매 영업만이 정지되고 나머지 영업은 수행이 가능한 점 등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게 보통이다(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단8858 판결 등 참조).

4. 향후 과제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다. 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기성세대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담배가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행 19세인 담배구매 가능 연령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나 도시별로 담배구매 가능 연령을 정하고 있다.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오리건주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인 주의 뒤를 이어 담배 구매가능 법적 연령을 21세로 정하는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5년 미국 전역에서 가장 먼저 담배 구매 연령을 만 21세로 상향한 매사추세츠주 니드햄 지방에서는 5년간 고교에서 흡연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 지역의 성인 흡연율도 2016년 현재 8%로 전국 평균 18.1%보다 훨씬 낮다. 이와 같이 담배 구매가능 연령을 높이면 청소년은 물론 성인 흡연률이 감소하고 그만큼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는 앞당겨 실현될 것이다. 우리도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더욱 높이고 청소년 담배 거래 규제를 더욱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